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시	배포	2017.12.4(월)
책 임 자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주홍민(02-2100-2970)	담 당 자	김민하 사무관 (02-2100-2972)	
	금융위 FIU기획협력팀장 손성은(02-2100-1730)		이영민 사무관 (02-2100-1722)	
	국조실 금융정책과장 이등엽(044-200-2190)		김정훈 서기관 (044-200-2191)	
	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고광희(044-215-2750)		김채윤 사무관 (044-215-2758)	
	기재부 외환제도과장 이형별(044-215-4750)		유예림 사무관 (044-215-4751)	
	기재부 금융세제과장 송진혁(044-215-4230)		조윤석 사무관 (044-215-4232)	
	공정위 약관심사과장 배현정(044-200-4450)		김유진 사무관 (044-200-4462)	
	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박성훈(02-2110-3167)		김봉진 검사 (02-2110-3759)	
	방통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천지현(02-2110-1567)		황선철 사무관 (02-2110-1525)	
	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한경수(044-204-3202)		김필식 사무관 (044-204-3222)	
	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장우성(02-3150-1605)		김상순 팀장 (02-3150-0252)	
	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차현진(02-750-6615)		이병목 팀장 (02-750-6764)	
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 임채훈(02-3145-7850)	김용태 팀장 (02-3145-7425)			
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대응센터장 김주영(061-820-1830)	윤석웅 팀장 (02-405-5563)			

제목 : 향후 대응방향 점검을 위한 「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」 개최

- ◆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「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」 를 개최
- ◆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, 법무부 중심의 추가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
- ➔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개편하고, 신속하게 규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

I. 회의개요

□ 금일 '17.12.4.(월) 09: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「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」 를 개최*

*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

- 최근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을 논의하고,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을 재점검함

Ⅱ. 주요내용

□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,

-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,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
- 또한, 그간 지난 9월 관계기관과의 공조하에 발표한 '가상통화 대응 방향' 후속조치를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온 현황을 점검

□ 그러나,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

- 11.28일 총리께서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을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고,
- 이에 최근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, 필요시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

□ 이에 TF 회의에서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,

- TF에서는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,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, 추가대책 마련·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

※ 법무부는 금일(12.4일) 오후 2시(예정), 가상통화 대응관련 보도 자료 배포 예정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fsc@korea.kr	 넓게 들겠습니다 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① 매우 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

-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·공급에 따라 변동하며, 정부·금융 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
- 또한,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
-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본인의 책임 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

② 유사수신·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주의

- 최근 유사코인 투자시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 하여 유사수신·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
- 비트코인 등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,
-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
-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 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이며,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요망됨

* 수원지방검찰청 배포 보도자료 참조('16.6.20일, '16.7.27일, '17.6.22일)

③ 해킹 및 암호키(Private Key) 유실 위험에 노출

- 이용자가 가상통화를 직접 보관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는 경우에도 가상통화 보관지갑 해킹으로 이용자 자산이 탈취될 위험이 존재함
- 또한, 가상통화 거래시 필요한 암호키(Private Key)가 유실되는 경우 해킹 없이도 이용자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음